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

- 1) 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 2) 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 3) 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다. 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 1) 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서식

라.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 1) 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 1) 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으로,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등록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요청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 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이하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같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고 이를 내주어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가. 등록수첩(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첩을 발급한 자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경력등 확인증명서를”을 “경력증을”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경력등 확인증명서를”을 “경력증을”로 한다.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및 별지 제6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별지 제4호서식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앞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사 진 (2.5cm×3.0cm)	자격번호:
	성 명:
	자격종목:
	생년월일:
합격일:	. . .
발급일:	. . .
국가유산청장 직인	

85mm×55mm[pvc]

(뒷면)

1.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 www.khs.go.kr ☎ 1600-0064

85mm×55mm[pvc]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①자격명 (자격종목)					
	②자격번호					
	③자격취득일 (합격연월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④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⑤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번호		
		~				
		~				
		~				
		~				
⑥교육	교육기간	교육구분	교육종류	이수시간	교육기관	교육명
	~					
	~					
⑦상훈 · 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 · 제재 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뒤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사진 1장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1. ①, ② 및 ③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2. ④란은 최종학력(대학 이상 모두)을 적습니다.
3. ⑥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경력증 발급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 경 사 항	① 학 력	재 학 기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					
		~					
		~					
	② 교 육	교육기간	교육구분	교육종류	이수시간	교육기관	교육명
		~					
		~					
		~					
	③ 상 훈 · 제 재	발생 연월일	종 류		상 훈 · 제 재 기 관		근 거
	④ 추 가 경 력	회사명	근무기간		업 종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변경신고서 작성방법

1. ①란은 기존 신고 외 추가되거나 변경된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 업무에 근무하고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사진 (3.5cm x 4.5cm)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구분	교육종류	이수시간	교육기관	교육명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 기관	근거

사무경력

기간	근무처명	업종	등록번호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해당 분야 종사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등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수탁기관의 장)

적 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현황	(번호)
등록수첩 발급		신청 ☐ 미신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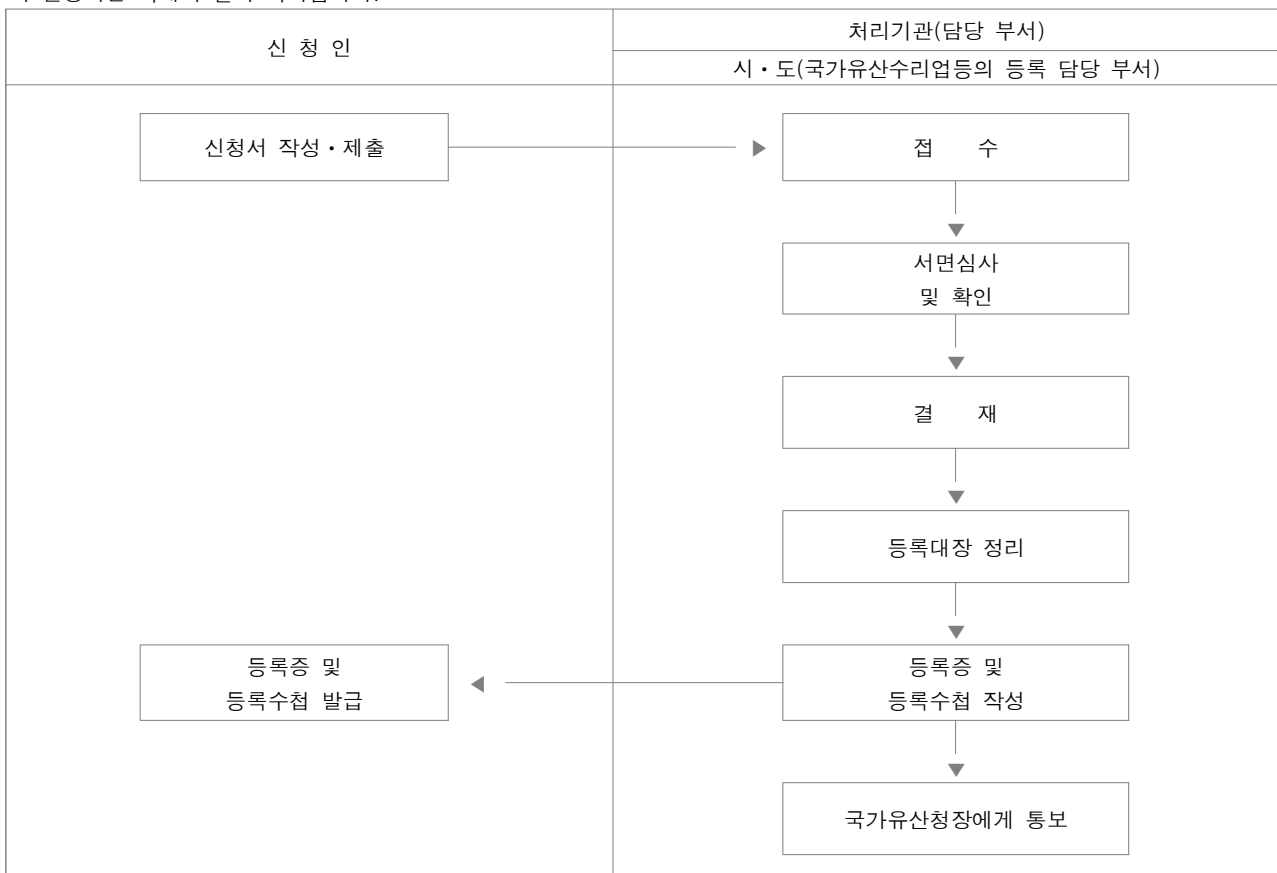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국가유산수리업등 종류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 업 소 소 재 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등 록 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이
호
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작 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illegible]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illegible]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록변경사항

[illegible]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수리 능력

연도	국가유산수리의 업종	금액(천원)	고 시 일	기 록 자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 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호제2항에 따라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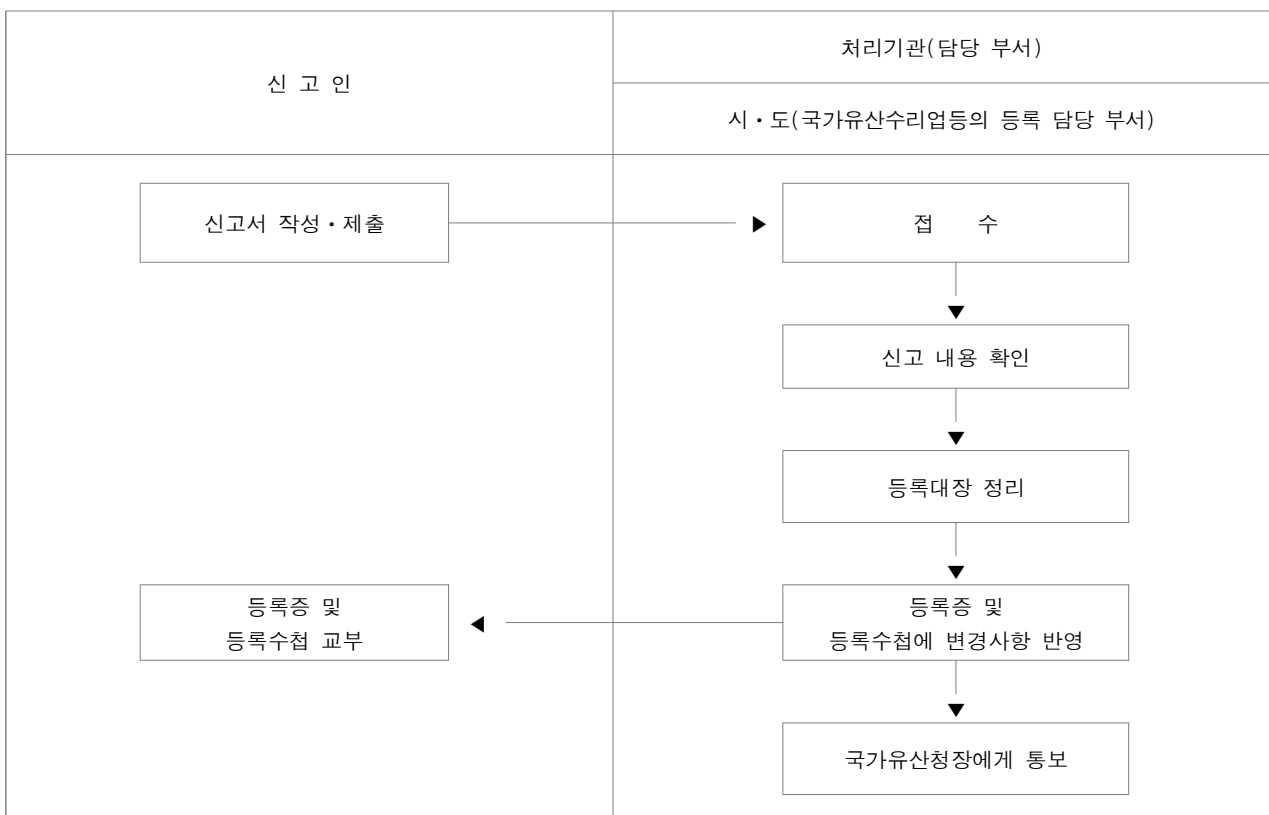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담당업무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 담당업무는 아래 표의 담당업무 중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구분	설계		시공		감리				관리·감독	
담당 업무	책임(총괄) 기술인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공사·용역 감독	기술지원 및 관리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 ④ (생략)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받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에 관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 ----- ----- -----

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

-----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 등록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요청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등록증-----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변경신고 등) ① -----

류

가. 등록수첩

나.·다. (생 략)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생 략)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의3

--

가. 등록수첩(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첩을 발급한 자만 해당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반영하여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별
지 제6호의7서식-----
----- 경력증을 -----

-----.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	-----
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	---. -----
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	-----
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	-----
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	----- 별
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	지 제6호의7서식-----
리기술자등 <u>경력등 확인증명서</u>	----- <u>경력증을</u> -----
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
받아야 한다.	-----.